

보도일시	2021. 4. 21.(수) 석간 *인터넷 2021. 4. 21.(수) 11:00 이후 / 총 4쪽		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	과장 여성철 사무관 김서원	044-202-7554 044-202-7560
	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계획부	부장 서윤석 차장 유양문	052-704-7361 052-704-7362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, <http://www.kcomwel.or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

“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도약”

30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도입률 19년 24%→ 29년 43% 목표

- 「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단 발대식」 개최-

-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이 개정(‘21.3.24.)됨에 따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‘22.4.14.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 -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와 근로복지공단(이사장 강순희)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공동으로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21일(수),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.
 -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이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개별 적립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공동의 기금을 조성·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연금서비스 제도이다.
 - 이들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립금 규모가 작아 수익률 등의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.
 - 선진국에서도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과 노후소득 확충을 위해 공적 퇴직연금서비스를 시행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.
- * (사례) 일본의 중소기업퇴직공제제도, 영국의 국가퇴직연금신탁(NEST)

-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, 노·사·정,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제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제도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, 설립 초기 단계에는 외부위탁 운용 방식(OCIO) 등을 활용하여 적립금을 운용할 계획이다.
-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부담금 및 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.
-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단은 향후 1년간 단계별 업무의 체계적 설계, 하위법령 및 운영규정 정비, 대국민 인지도 향상 등을 추진한다.
- 또한 기금관리, 직·간접 자산운용방식 및 지급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 분야의 전문가로 기금설립자문단(10명)을 구성했다.
- 오늘 개최된 발대식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제도 시행 후 6년 이내에 약 70만개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을 운영 목표로 제시했다.
- 운영 목표를 달성할 경우,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2019년 기준 24%에서 2029년에는 43%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.
- 이재갑 장관은 “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향후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,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  <small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small>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김서원 사무관(☎044-202-7560)이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계획부 유양문 차장(☎052-704-7362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참고1

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단 발대식 계획

□ 발대식 개요

- (목적)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 시행 준비 및 홍보
- (일시) '21. 4. 21.(수) 11:00~11:30
- (장소)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(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)
- (참석) 고용노동부, 근로복지공단, 기금설립자문단* 등 총 25여 명

* 기금설립자문단 총 10명 중 8명 참석

□ 세부일정

***행사전체 공개**

구분	시간		주요 내용	비고
본행사	11:00 ~ 11:02	2'	■ 개회선언	* 사회자
	11:02 ~ 11:04	2'	■ 내빈소개	* 사회자
	11:04 ~ 11:09	5'	■ 자문단 위촉	* 고용노동부 장관
	11:09 ~ 11:12	3'	■ 기념사	* 고용노동부 장관
	11:12 ~ 11:15	3'	■ 인사말씀	* 근로복지공단이사장
	11:15 ~ 11:22	7'	■ 비전보고	* 근로복지공단
	11:22 ~ 11:25	3'	■ 세레모니	* 공동단장, 수건 퍼포먼스
	11:25 ~ 11:27	2'	■ 폐회선언	* 사회자
	11:27 ~ 11:30	3'	■ 기념촬영	* 내빈

□ 기본개요

- (목적) 퇴직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지원(근로복지공단 수행)
- (가입대상)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
- (제도운영) 사용자가 기여금(임금총액 1/12 이상)을 공단에 납부
 - 「기금제도운영위원회」(노사정 대표,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, 공단 이사장(위원장) 등) 결정에 따라 공단이 전문적으로 운용
 - * 적립금 운용성과는 가입자에게 귀속
 - ** 기존 확정기여형(DC) 퇴직연금제도와 달리, 근로자의 별도 기금 운용 지시 필요없음
 - 중소기업노동자의 개별 적립금을 기금화(pooling)함으로써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 및 규모의 경제 추구 가능
 - 표준계약서 및 비대면 업무절차 도입을 통한 절차 간소화

□ 지원내용[안]

- 영세 중소기업의 열악한 상황을 감안, 부담금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들의 가입 유도

